

1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
2 사업내용

지원 규모 총 52,605백만원, 2,000개사 내외*
* 업체당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 업체수는 유동적

지원 대상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“C” 해당기업
*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중 2개사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

신청 제외 대상

- *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가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* 국제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- * 휴·폐업 기업
- * 불건전 영상계미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*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*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*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 되는 경우
- *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바우처 잔액 보유) 중인 업체
- *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- *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*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지원 내용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을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5천만원 한도로 지원

지원금액 및 기간 국비 50백만원 한도(부가세 수요기업 부담), 1년 이내(최대 22년 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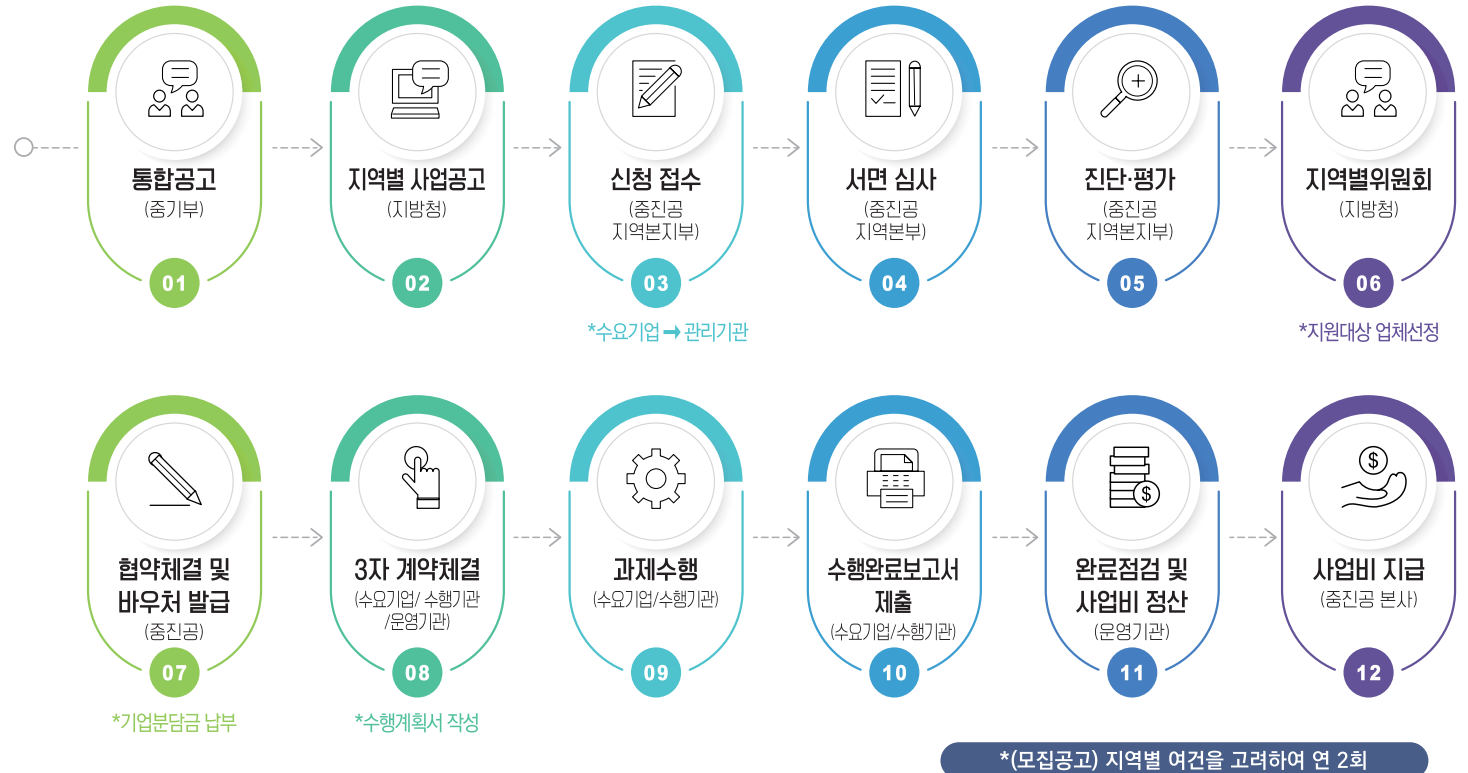
보조율 매출액에 따라 50~90% 차등 지원

평균 매출액	정부지원 비율	기업분담금 비율
3억원 이하	90%	10%
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80%	20%
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	70%	30%
50억원 초과 ~ 120억원 이하	50%	50%

* 예) 매출액 10억원 규모 기업의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,250만원 (정부지원 : 5,000만원(80%), 기업분담금 : 1,250만원(20%) + 부가세625만원 = 1,875만원)

3 신청기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개별사업공고 일정에 따름

4 신청방법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에서 신청
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별 구분하여 접수



* (모집공고)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 2회

1 모든 서비스는 등록된 수행기관과 메뉴판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.
* 등록되지 않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밖의 외부 계약 또는 수요기업 자체 수행에 대한 비용은 지원 불가

2 바우처 사용기간은 협약(관리기관-수요기업)으로부터 1년이며, 기간 내에 모든 사업수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* 단,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바우처 사용기간은 익년 상반기(2022년 6월)를 넘길 수 없습니다.

3 사업 종료 이후,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제제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잔액규모	제제조치
바우처협약액의 30% 초과	차년도 혁신바우처사업 참여금지
바우처협약액의 15% 초과 ~ 30% 이하	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시 5점 감점
바우처협약액의 15% 이하	제제조치 없음

4 바우처는 분야당 1개의 프로그램 및 계약에 사용 가능합니다.
* 단, 잔여 바우처 금액을 해당 분야별 1회에 한하여 프로그램별 한도 이내에서 추가 계약 가능합니다.

ex. 기술지원 6천만원, 마케팅 4천만원 바우처 발급 시
1. 시제품제작 4천만원, 규격인증 2천만원(추가계약), 홍보지원 2천만원, 브랜드 지원 2천만원(추가계약) → 가능
2. 시제품제작 4천만원, 규격인증 1천만원(추가계약), 제품시험 1천만원(추가 계약), 홍보지원 1천만원, → 불가



분야 세부내용 및 한도

분야별	지원 프로그램	지원내용	정부지원금 한도(천원)
컨설팅 (5개)	경영기술전략	생산관리, 품질관리, 기술사업화 전략, 노무, 인사, 조직, 세무, 재무, 회계, 경영전략,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, 영업전략	15,000
	스마트공장추진전략	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, 활성화,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	15,000
	규제대응	최저임금제 대응, 근로시간 대응, 화학물질관리 대응	15,000
	산업안전	위험성 평가, 공정안전관리,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	15,000
	융복합	적합도 분석,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	20,000
기술지원 (6개)	시제품 제작	디자인 목업, 제품 형상 구현(샘플금형, 비금형, 정밀 미세가공, 섬유, 식품)	30,000
	시스템 및 시설 구축	생산관리 정보화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, 연구시설, 스마트공장 구축 등	20,000
	기술이전 및 지적권 획득	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, 지식재산권 획득(특허출원, 상표출원, 국외출원, 실용신안출원, 디자인 출원) 등	15,000
	규격 인증	국내인증(품질 검증, 제품 인증), 국외인증 등	15,000
	제품 시험	하드웨어(성능, 안전성, 신뢰성, 조달품 적합, 유해물질 분석, 자기품질검사), 소프트웨어(보안해킹, 웹/앱)	10,000
	설계	시제품 설계(회로, CAD), 공정설계(생산공정, 생산라인) 등	10,000
마케팅 (3개)	디자인 개선	제품 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	15,000
	브랜드 지원	C디자인개발, B개발, 브랜드스토리, 브랜드슬로건 등	20,000
	홍보지원	온라인(온라인 광고, 홍보영상, 홈페이지 등) 및 오프라인 매체(방송, 신문, 옥외광고, 교통매체, 홍보물 제작 등)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	20,000

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르크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담배 제조업	C12	
17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8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19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0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1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2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3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4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5.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
*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에 따른다.

*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*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,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하다.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1357

중진공 통합 콜센터 : 국번없이 ☎ 1811-3655

▽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

지방청	주소	전화번호
서울지방청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정부과천청사1동	02-2110-6361
부산지방청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신단335로8	051-601-5141
대구경북지방청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122-11	053-659-2292
광주전남지방청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391나라기움 광주통합청사	062-360-9143
경기지방청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87	031-201-6980
인천지방청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82	032-450-1152
대전세종지방청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104	042-865-6156
충남지방청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9층	041-415-0631
울산지방청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울산경제진흥원내2층	052-210-0042
강원지방청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262	033-260-1632
충북지방청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48	043-230-5333
전북지방청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	063-210-6452
경남지방청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50	055-268-2554 055-268-2551

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 문의처

지역본(지부)	주소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81가산W센터413호	02-2106-7454
서울동부지부	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16 VR빌딩1층	02-2023-4312
서울북부지부	서울 중구 무교로21대익스체인지서울 빌딩5층	02-769-6414
인천지역본부	인천 연수구 갯벌로12갯벌타워14층	032-837-7032
인천서부지부	인천 서구 정서진로410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301호	032-560-2363
경기지역본부	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107경제과학진흥원11층	031-260-4931
경기동부지부	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322코리아디자인센터2층	031-760-9012
경기서부지부	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243,신용보증기금 빌딩1층	031-783-0623
경기남부지부	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51,원화캐슬빌딩4층	031-899-9104
경기북부지부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38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102호	031-920-6732
강원지역본부	강원 춘천시 중앙로54우리은행빌딩5층	033-269-6942
강원영동지부	강원 강릉시 강릉대로33강릉시청15층	033-649-9373
대전세종지역본부	대전 서구 청사로136대전무역회관15층	042-281-3746
충남지역본부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충남경제진흥원센터4층	041-589-4586
충북지역본부	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4층	043-903-9356
충북북부지부	충북 충주시 번영대로200 2층	043-841-3614
전북지역본부	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276전주상공회의소4층	063-210-9915
전북서부지부	전북 군산시 대학로331한화생명4층	063-460-9820
전라지역본부	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(차평동)상무트윈스빌딩6층	062-600-3061
전남지역본부	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4층	061-331-8707
전남동부지부	전남 순천시 장영로18,순천상공회의소3층	061-729-1559
대구지역본부	대구 북구 엑스코로10대구전시컨벤션센터4층	053-606-8432
경북지역본부	경북 구미시 이계로7경북경제진흥원5층	054-440-5913
경북동부지부	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394포항테크노파크1층	054-288-7342
경북남부지부	경북 경산시 삼풍로27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501호	053-603-3324
부산지역본부	부산 사상구 학감대로257보생빌딩 에이동1층	051-630-7402
부산동부지부	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99역산e-센텀클래스원201~202호	051-745-5922
울산지역본부	울산 남구 삼산로274 W-Center 14층	052-703-1134
경남지역본부	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362창원컨벤션센터3층	055-270-9755
경남동부지부	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80-16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4층	055-310-6614
경남서부지부	경남 진주시 영천강로167미노휴먼센터6층	055-751-2906
제주지역본부	제주 제주시 연삼로473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	064-754-5157

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

www.mssmiv.com



중소벤처기업부

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